



오 산

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

한국세무사회	결재	
접수일시 2019-09-26	지시사항	
접수번호 1785	OSAN	
시무과	2019.09.18	
담당자		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오산시 옴부즈만 모집 공고 홍보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시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오산시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 하오니,
3.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모집인원 : 1명

나. 활동시간 및 신분 : 상근(주40시간) 위촉직(비공무원)

다. 임 기 : 4년(단임)

라. 접수기간 : 2019.9.30.(월) ~ 2019.10.4.(금) (4일간)

마. 접수장소 : 오산시청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

바.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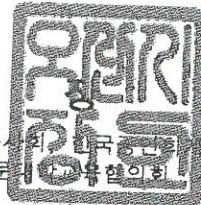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 공고문 및 홈페이지 참조

붙임 1. 오산시 옴부즈만 모집 공고문 1부.

2. 오산시 옴부즈만 지원서 등 제출서식 1부. 끝.

오 산 시

수신자 전국시군구, 대한변호사협회, 대한건축사협회, 한국세무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, 한국기술사회, 대한변리사회, 지방행정동우회,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,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, 노, 도, 로



주무관

윤영

민원조사팀장

정은자

청렴팀장

대결 2019. 9. 18.

금민섭

감사담당관 전결

협조자

시행 감사담당관-5802

(2019. 9. 18.)

접수

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, (오산동, 오산시청)

/ www.osan.go.kr

전화번호 031-8036-7917 팩스번호 031-8036-7918 / youngalllove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,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.

오산시 공고 제2019-1155호

오산시 옴부즈만 모집 공고

우리 시에서는 「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19년 9월 19일

오 산 시 장

1. 위촉분야 및 인원

구 분	위촉분야	위촉예정인원	위촉기간	비 고
공개모집	옴부즈만	1명	4년(단임)	

2. 위촉 신분 및 보수

- 가. 위촉신분 : 위촉직(비공무원)으로서 주 40시간 옴부즈만 활동 수행
 나. 활동지원비 : 임기제공무원 4급 상당 연봉의 수준(연봉 59,891천원)

3. 주요업무

- 가.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
 나.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
 다.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 라.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
 마.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 바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 사.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 아.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 자.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
 차.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

4. 전형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심사

※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

나. 2차 면접심사 : 적격요건 심사

※ 읍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, 읍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, 전문성
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

다. 의회 동의 대상자 발표 :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

라. 의회 동의 :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오산시 읍부즈만으로 위촉됨

마. 최종발표 :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(2019년 12월 예정)

5. 지원자격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오산시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」 제5조(결격사유) 및 같은 조례 제6조(겸직금지)에 해당되지
아니하고,

나.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
있었던 자
- 2)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
- 3)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- 4)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
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
추천을 받은 자

※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「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
규칙」 제2조 적용

※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

다.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없음

6. 지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19. 9. 30.(월) ~ 10. 4.(금) 09:00 ~ 18:00

나. 접수장소 : 오산시청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(오산시청 3층)

※ 근무시간에 접수 가능 : 평일 09:00~18:00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·팩스·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

라. 제출서류

1) 지원서 1부

2) 자기소개서 1부

3) 직무수행계획서 1부

4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5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6)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7) 최종학력 증명서 1부

8)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(해당자에 한함)

※ 모든 제출서류(면허·자격증 제외)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.

※ 지원서 등은 오산시 홈페이지(www.osan.go.kr)에서 내려 받아 사용

7. 유의사항

가.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
나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

다.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

라.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마.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류전형일 7일전까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함

바.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오산시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오산시의 해석에 따름
사. 읍부즈만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심의 결과 부결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아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오산시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(☎ 031-8036-7917)으로 문의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해당사유 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오산시 읍무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결격사유) 해당사유 〉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정당의 당원
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

〈 오산시 읍무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겸직금지) 해당사유 〉

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
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다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